

<임원선임에 관한 규정>

제 2 장 회장추대위원회<신설 2021.2.9>

제5조(구성 및 비용) ①정관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 선거 전에 회장을 추대한다.

②추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증경회장 단 추천 2인, 부회장 1인, 자문위원 2인, 이사 2인, 분과위원회연합장, 청년 CEO위원장, 여성CEO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.

③위원장은 자문단의장으로 보하며, 의결권은 없다. 단, 자문단의장이 부재하거나 위원장직을 사퇴한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다.

④위원은 가입정회원이어야 하며, 추천되는 위원은 해당조직의 장이 추천한다.

⑤추대위원회의 운영경비는 협회 예산에 계상한다.

제6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신임임원 선임년도의 직전년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.

제7조(임무) 추대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담당 수행한다.

1. 회장추대후보 신청 공고 및 접수
2. 회장추대후보 추천
3. 회장추대후보 검증 및 결정
4. 기타 회장추대와 관련한 사항

제8조(의사)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
②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가 소집된 경우 위원장이 불참할 시에는 출석위원의 호선으로 선임된 임시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.

③회장추대 결정은 위원 임기내에 만장일치로 정하며, 총회 동의로 회장선임을 확정한다.

④회장추대자가 결정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대위원회 임기를 1주일 연장할 수 있다. 다만 임기내 회장추대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추대위원회 활동은 종료한다.

⑤회장추대자가 결정되면 회장입후보등록금을 결정한 후에 이사회 동의를 받는다.

⑥추대위원회 임기 시작 3일 전까지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조의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않는다.